

서울고등법원

제 28 민사부

결정

사 건 2017나2060414 부당이득금
원 고 아현제1다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(항소인)
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
(피항소인)
문서소지인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

주 문

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라.

문서의 표시 : 별지 문서제출명령신청서(18. 2. 22자) 문서의 표시와 같음.

이 유

이 사건 문서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. 2. 22.

재판장

판사

이 강 원



판사

홍 승 구



판사

조 기 열



열심응용

문서제출명령 신청서

사 건 2017나2060414 부당이득금 [담당재판부:제28민사부]
원 고 아현제1다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피 고 서울특별시 마포구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.

문서의 표시

1.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-9, 같은 동 85-10 및 같은 동 85-718 각 도로(3필지의 면적 합계 228제곱미터)에 관하여, 위 도로들이 "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"를 알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관한 각 '토지이동(지목변경)정리결의서'[서울 마포구 아현동 85-9 및 같은 동 85-10 각 도로에 관하여는 1969. 11. 24.자 기준, 서울 마포구 아현동 85-718 도로에 관하여는 1964. 5. 7.자 기준, 이하 같습니다.]
2. 위 각 도로들이 "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"를 알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관한 각 '토지이동(지목변경) 신청서' 및 각 '이동지신청서' 일체(토지의 이동사유가 기재된 조서 포함)
3. 위 각 도로들이 "어떠한 토지에서 위 각 도로로 이동되었는지"를 알 수 있는 각 '지적 공부 및 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부' 및 각 '토지대장및동집계부이동정리결의서'

문서의 취지

서울 마포구 아현동 85-9, 같은 동 85-10 및 같은 동 85-718 각 도로(합계 228 제곱미터)가 도로로 지목 변경된 원인을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.

문서를 가진 사람

피고 보조참가인(서울특별시)

증명할 사실

서울 마포구 아현동 85-9, 같은 동 85-10 및 같은 동 85-718 각 도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정비기반시설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.

[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은 영구보존하는 문서이며, 피고의 2018. 2. 22.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공문에 따르면, 위 각 문서를 피고 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]

문서제출의무의 원인

- 상대방이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음(인용문서)
-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(인도, 열람문서)
-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음(이익문서)
- 문서가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것임(법률관계문서)
- 그밖에 제출이 필요한 문서사유(사유 :)

2018.02.22

원고 소송대리인
변호사 전영상

서울고등법원 귀중